

제1회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예술인 복지법 입법 경험이
연구자 권리 증진에 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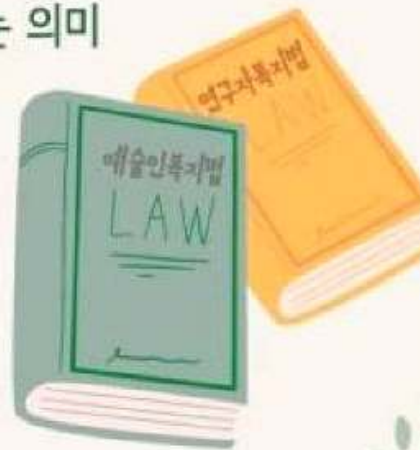
일시: 4월 20일(수) 19시

장소: 온라인(ZOOM)

신청기간: 4월 18일까지

신청방법: 아래 구글링크에서 신청서 작성

<https://bit.ly/연구자복지법>



발표 1

예술인 복지법 추진배경 -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발표 2

예술인 복지법 입법 과정의 쟁점과 논란 -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토론

김진균(비정규교수노조), 이상률(비정규교수노조)

조서울(대학원생노조), 김세연(대학원생노조)

주최 (사)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목 차

1. 발표1 : 예술인복지법 입법과정의 쟁점과 논란	3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2. 발표2 : 예술인복지법 추진배경	10
염신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3. 토론1 : 예술인 복지법 입법 경험과 연구자 복지법의 가능성	23
김진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4. 토론2 : 예술인은 누구인가?	26
이상룡(비정규교수노조)	
5. 토론3 : 공공재로서의 예술과 공공재를 만드는 사람들	28
조서울 (대학원생노조)	
6. 토론4 : 토론문	30
김세연 (대학원생노조)	

제1회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022년 4월 20일)

예술인복지법 입법과정의 쟁점과 논란

김상철 /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밥 먹고 예술합시다' 라는 선언

예술인소셜유니온은 2011년 말 '밥 먹고 예술합시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그동안 신비화된 예술창작의 날 것을 드러내고 낯설었던 창작노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탈장르, 탈당사자 소셜 유니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회원조직에서 활동가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예술노동의 쟁점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안된 법률 총 4건

- 정병국, 전병헌, 최종원 법안에서는 포괄적 근로자 의제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선택적 근로자 의제까지 다뤄짐
-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

노동부는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가 당시 쟁점이었던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보장 문제와 동일한 선 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사유로 거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관련 협단체의 '근로자 의제' 반대 여론을 만들어서 입법 과정에 개입

예술인복지법 쟁점 ① 근로자 의제

3

[보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계 내부동원 사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노동을 매개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술계 내부동원 전략을 사용했는데, 해당 전략이 파괴적이었던 것은,

- (1)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내부 불신을 만들어내고
- (2) 제도 도입 불발의 원인으로 '내부합의 부재'라는 명분 구축

→ 예술쟁점의 '내부자 논리 구조' 심화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할 거야"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
문학	○ (수용불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7종이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문학장르에 대한 표준계약서 불필요
공연	○ (수용불가) 타법*과 같이 「예술인 복지법」에서도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 적용 불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미술	○ (수용불가) 미술장르(회화, 조각, 설치, 판화, 사진 등)와 전시방식(기획전, 대관전, 공공미술(실내/실외, 영구/반영구/임시 등))이 매우 다양하여 몇 개로 범주화하여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되,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영화	○ (수용)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경우 의무
방송 (작가, PD)	○ (수용불가)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사인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제하기에는 과도한 침해 우려
만화	○ (수용불가) 만화웹툰 계약의 형식이 매우 다양해 모든 계약을 표준계약서로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표준계약서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신속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어려우며 계약 자유가 위축되어 작가에게 불리한 결과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 적용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수용 곤란

4

예술인복지법 쟁점 ① 근로자 의제

근로자 의제의 문제는 '자기고용'이 핵심

-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는 한편으로는 자기 노동에 대한 정의 definition 문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보장 체계의 확대라는 전략적 측면이 모두 존재
- (1) 예술창작이 놓여 있는 구체적인 생산 장의 성격 VS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유와 자율에 대한 감각
- (2) 근로계약 중심의 복지체계에 포괄되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서 창작=노동이라는 개념 필요

예술창작의 세속화 문제는 예술인복지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끊임 없이 내부적인 모순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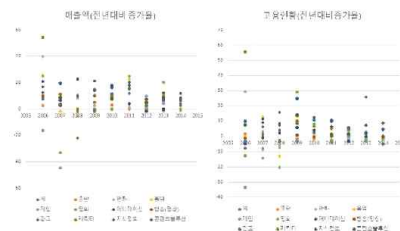
Ex 1) 최고의 작가 사망으로 인해, 초기 예술인복지 사업으로 '긴급 생계지원금'이 신설되었지만 이후 '창작준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금 성격이 모호해짐

Ex 2)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과정에서는 예술인의 '자발적 빈곤'이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용이하게 만들

예술인복지법 쟁점 ② 재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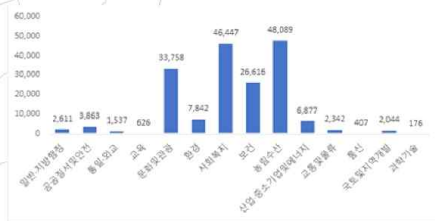
자체 복지재원의 마련 VS 개별 사업 구조

- 초기 제정안에서는 기금 설치안, 복지채권 발행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제정과정에서 독립적인 재원에 대한 논의는 사라짐
- 예술인소셜유니온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사업 구조 내에서의 이익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상관구조를 만들고자 했으나 정부의 관심도 낮았고 예술생태계 내에서도 기초예술생태계와 문화산업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였음



2000년에서 2015년 정도까지 문화산업의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6% 내외를 보였으나, 해당 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역설이 확인되었음

(위의 그림은 나라지표를 통해서 2005~2015 매출 및 고용현황을 비교한 것임)



예술인복지법_쟁점

개별 사업 중심의 구조화: 재원의존

-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의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반대하였음
- 결국 장기적 대안 모색이라는 이유로 독립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사항은 배제

단위 사업 중심의 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은 (1) 전문기관의 집행 기관화 (2) 예술인의 개인화 (3) 경로의존성의 심화라는 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1) 예술인복지재단은 자체재원 없이 이전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 왜 고래여 민간재단으로 기구를 만들어야 했나?
- (2) 기존 공모사업 구조와 유사한 복지지원정책 구조 성립
- (3) 이x 새로운 복지정책도 개별 사업으로 만들어져 집행
(ex)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7

광의의 예술인 VS 협의의 예술인: 어떤 예술인을 보호할 것인가

- 법률 제정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의 대상으로 계약자를 작성하고 고용자와 노동자로서 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5만 7,000명 정도를 정책대상으로 제시
- 당시 기준으로 통계청 직업조사 결과 상 문화예술인은 54만명, 그 중 근로계약 관계로 추정되는 예술인 18만명이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술인문화법 제정법, 2011년)

어떻게 직업적 예술인을 판별할 것인가?

8

예술인복지법_쟁점

③ 대상자 선별

활동증명제도라는 우회길

- 누가 예술인인가라는 질문은 의도된 질문에 가까운데, 이를 통해서 정책수립을 백지화할 수 있음(계획과 집행의 구조)
- 시행령으로 위임된 활동증명의 방식을 둘러싸고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의 정리로 전환한 것이 현행 예술인복지제도를 만든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누가 예술인인가라는 질문을, 어떤 예술활동을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로 바꾼 것이 바로 현행 활동증명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

- 기존 근로계약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극복: 한국의 예술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고려
- 누가 예술인인가는 필연적으로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미학적 논의로 전개되는데 이런 논의를 전략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9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활동 증명 신청 방법



[김상철, 활동증명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9. 예술인복지재단]

10

조직 및 부서별 업무내용

예술인복지법_쟁점
④ 전달 체계

[2021년 현재 조직구조]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공제회 등 설립 검토

- 어떤 전달체계를 만들 것인가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위원회의 개편이나 문화예술관광부 내에 예술인복지과 신설 논의가 있기도 했으나 미미
- 예술인공제회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논의지만 여러가지 쟁점에 의해 가시화되기 못함

복지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운영과정의 개입이 어려워진 한계가 존재

그와 별도로, 지방정부나 지역문화재단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돈된 내용이 부재함

→ 사업으로 묶인 관계 이상의 의미가 부재

‘예술인공제회’ 논의과정의 시사점: 예술생산에 있어서 한국의 역사적 경로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예술인복지사업의 전달체계 구조

예술인복지법_쟁점
④ 전달 체계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복지정책은 끊임없는 전진과 후퇴의 퇴적 과정의 결과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대외적인 긴장 뿐만 아니라 대내적 긴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가 관건)

Ex) 예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교육/강사 구분

Ex)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과정에서 갈등(특례 조항 인식 차이)

Ex) 예술인권리보장 제정과정에서의 갈등

예술인복지법 추진배경

염신규_(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1. 예술인복지정책의 배경

1) 오랜 예술인 복지 요구

한국에서 예술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단적인 실례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대선 당시 당선자인 김영삼 후보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14대 대선 김영삼 후보 문화분야 공약>

70. 예술인 창작여건을 개선하여 자긍심 높은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가. 문화창조자의 창작여건 개선과 예술인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나. 전통문화의 전승창달로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한다.

71. 지방문화를 활성화하여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가.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지역문화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

나. 문화시설의 사회교육기능을 내실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72. 선진방송기반을 구축하고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언론환경을 조성한다.

가. 선진 방송기반을 구축한다.

나.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건전한 언론환경을 정착시킨다.

이런 요구는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술인들이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의 경제적 열악함의 연원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며 또한 단지 한국 사회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특히 예술이 시장구조에 진입한 근대 이후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근대 이전의 주류 예술은 대체적으로 귀족이나 왕실, 종교집단과 같은 지배집단의 후원 구조에 놓여있었고 풀뿌리예술(민중예술) 역시 공동체의 후원과 비전업적 구조로 유지되어왔다. 사회적 분업체계가 전면화된 근대 이후 예술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화되고 시장 구조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예술과 예술인은 독립적 지위와 자율성을 갖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근대 예술이 생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예술인의 두 가지 이미지는 단적으로 이 지점을 보여준다. 한 가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예술인”이고 또 한 가지는 “천재적인 예술인”의 신화다. 이런 극단적인, 예술인의 대비되는 상(想)은 실상은 근대적 시장구조와 예술행위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조화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전통적인 후원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의 작품과 예술행위를 판매하는 구조에 들어가면서 예술인들이 직면한 것은 예술의 시장실패적 측면이었고 그리 와중에 예술을 팔아야하는 주변산업(매니지먼트, 출판 등등)은 예술인들을 천재적이거나 유별난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산업적 가치를 만들기도 했고 예술노동의 열악함을 예외적인 별종의 스캔들로 배재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런 것이 일정 정도 가능했던 것은 예술행위가 갖고 있는 몇가지 특성 때문이다.

2) 예술인 복지 정책의 근거

가장 큰 이유는 예술이 다른 분야와 달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든 탓이 크다. 시장에서 예술을 어떤 성격의 재화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주로 예술에 대한 공공(정부)의 지원이 갖는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다. 완벽하게 정답으로 정리되지는 못했지만 예술의 경제적 생산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공연의 생산비용에 대한 보몰(Baumol)과 보웬(Bowen)의 1960년대 연구일 것이다. 이들은 1960년대 중반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라는 선구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같은 장소의 물가를 다른 기간 동안 비교한 것이다. 그들은 1771-1772년 사이 영국 런던의 극장 공연 비용과 1963-1964년 시즌 극장의 공연 비용을 비교했다. 그 결과 공연비용은 14배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국의 일반물가는 6.2배 상승했다. 즉 공연 비용이 일반 물가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뉴욕의 공연을 대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중엽의 음악회 비용을 계산했는데 콘서트 비용은 연간 2.5%씩 꾸준히 상승했고 같은 기간 일가물가는 연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연 비용이 일반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보몰과 보웬은 “생산성 격차”에서 답을 찾았다. 공연예술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생산성 증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지만 예술 분야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기술발전과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이뤄지는 다른 분야와 달리 예술분야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상을 예술경영에서는 “보몰의 비용병(Baumol's cost diseas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예술을 단순한 사적교환재로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현대에 와서는 매우 강하게 제기되었다. 예술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주장이다.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재화 중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이 부분적으로는 사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공적인 경우에 시장 원리적인 경제 원칙의 적용은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바로 교육(education)의 경우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교육은 대체적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예술도 일부분 공

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혼합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한 공공재와는 달리 혼합재는 공중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고등교육, 전염병 예방 접종, 빈민가 정리 계획 등을 위한 시설의 제공 시 이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편익에 대한 요금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한다면 직접적인 편익의 향수로부터의 배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혼합재와 관련된 간접적인 편익에서 제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피할 수 없는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합재에 부여되는 가격으로는 상품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 원리에 혼합재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들의 수요가 없지는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의 기준에만 따를 수 없는 이유이며, 이럴 경우 공적 지원은 전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예술인 복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예술이 갖고 있는 생산성 측면에서의 “비용병”과 공공성을 갖고 있는 혼합재의 특성과 같은 경제적, 재화적 측면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또 다른 한편에는 한국 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원리, 신생 현대국민국가로서 민족문화중흥이라는 전통적 국가 주도 문화정책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그러니까 소위 근대국민국가 체제가 정착한 시점에서 예술의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삼고 지원한 것은 다분히 국가의 예술적 역량을 국가의 역량과 등치시키는 발상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근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던 제헌헌법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헌법상의 문화국가의 원리가 존재한다. 한국의 문화정책에서 국가는 문화를 책임지는 주체인 동시에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국가의 원리는 현대적 국민국가로 형성,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시대마다 국가 문화정책에 착종되어온 문제들, 예컨대 관료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기능적 민간동원방식, 성장만능주의, 그리고 계량적 성과주의의 문제들을 낳았고 그 때문에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지만 여하간 문화정책, 특히 세분해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최종적 책임자에 국가와 정부를 명시적으로 위치시키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이를 오히려 훨씬 강화된 형태로 명문화했다. 이는 한국에서 예술인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발생하는 주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것이 여타 분야 복지정책의 성장과 맞물리며 한국에서 예술인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이기도 하다.

2. 예술인복지법 이전의 정책 논의

한국의 주류문화정책에서 예술인복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시기이다. 참여정부의 문화부가 민간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2004년 발표한 <새예술정책 - 예술의 힘>(2004)은 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해 발표한 종합적 문화예술정책 백서라 할 수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다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정책 의제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예술인복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4대 역점 추진과제 중 “과제8.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로 말이다.

새예술정책 14대 역점 추진 과제

- 과제1.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 능력 개발
- 과제2.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 과제3. 예술의 공공성 제고
- 과제4. 장르별 예술창작활동 지원 확대
- 과제5.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 과제6. 남북 및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대
- 과제7. 국립예술시서, 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특화된 예술환경 조성
- 과제8.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과제9. 예술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 과제10.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 과제11. 개성 있는 지역문화 진흥
- 과제12. 예술지원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전환
- 과제13.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
- 과제14.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기에는 문화부와 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예술인의 정책적 개념화

무엇보다 정책의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에 예술인의 범위는 작가나 화가, 작곡가 등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예술가’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가’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이미 예술인들의 경력입증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캐나다의 사례처럼)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되거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예술인의 개념 정의와 그 적용 범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었다. 예술인 복지제도를 포함한 공적 지원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입증할 만한 주요 기준으로는 “일반 공중에 의한 예술인으로서의 평판, 다른 예술인에 의한 인정, 예술적 직업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의 양, 예술 활동에서 얻게 되는 소득의 양, 창작한 예술 작품의 질에 대한 평가, 예술 관련 전문단체의 가입 유무, 스스로의 예술인 의식 등”이 거론되었다. 이 시기부터 통상적 의미가 아닌 (복지정책을 포함한) 지원정책 하에서의 예술인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정부 시기 예술인 복지정책 논의

①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강화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정갑영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2003)가 그 출발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 평가에 기반 해 볼 때 질병이나 은퇴, 실업 등 소득 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또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노후와 실업을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보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술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공적 지원의 장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예술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창설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상 어렵다고 본다면,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 예술인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파악하고 있다.

② 기존 제도의 활용 방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예술인을 통합하는 것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구분 없이 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에, 그리고 전업예술인의 경우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방안은 보험료의 부과나 급여 결정 모두를 기존의 사회보험 조직에서 담당하는 반면, 정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불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예술인의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첫째, 예술인이 사회보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모색

둘째, 직장이나 지역 보험체계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제능력의 부족으로 제도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 보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실시하면 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장제도에 포섭
셋째, 일정한 나이가 된 예술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가칭 ‘예술인기초연금제도’도 검토

③ 가칭 ‘예술인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예술인들의 연금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되며 예술계 내부의 상호부조 체계를 구축한 후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제회 설립은 예술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부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술인공제회의 기능은 예술인들의 생활 자금이나 주택 자금 등을 대부해주자는 것이었다. 특정 직업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제회는 다양한데 많은 경우 자발적 조직이 우선 결성되었다가 이후 정부의 법률에 의해 공적 조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대표적인 공제회로는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의 사례가 검토되었다.

예술인의 공제조합 역시 기존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이들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각종 편의서비스, 주택서비스 등이 거론되었다. 금융서비스는 공제급여와 대출 서비스로 구성되며, 편의서비스는 숙박시설 및 의료 시설에 대한 이용서비스가, 주택서비스의 경우는 공제회가 주축이 되어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또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 등이 논의되었다.

예술인을 위한 공제회를 만드는 방식에대해서 회원 모집을 통해 민간에서 공제회를 조직하고정부 혹은 공적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 문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예술인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기본법>이나 (가칭)「기초예술진흥법」에서 예술인의 정의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명시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공제회’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르별 직능별로 ‘공제조합’ 또는 그에 준하는 복지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검토되었는데 그럼에도 예술인 권익 대변조직이나 ‘예술인공제회’ 같은 상호부조 조직은 어디까지나 예술계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결합되는 방식이어야지, 정부가 선도하여 추진할 과제는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가칭 ‘예술가들 돕는 예술가들의 모임’과 같이 예술계 스스로 내부 상호부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가칭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예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되었다. 우리나라 체육인복지사업이 ‘국

민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사례로 제시되었다.(2007년 당시 체육인복지사업으로 ① 경기력향상연구연금, ② 경기지도자연구비, ③ 특별보조금, ④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⑤ 장애연금, ⑥ 체육장학금, ⑦ 국외유학지원금, ⑧ 복지후생금의 8개 사업에 연간 60억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예술인의 고용지위 및 고용환경 개선

또한 무엇보다 예술인 고용지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적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예술인 복지의 방향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예술인 직업 활동의 특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회보장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앵테르미땅과 유사한 '실업보험제도'를 통해 단속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예술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속 예술인들이 근로자(노동자)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이었다.

ㄱ.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획득 노력

일반적으로 예술인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체를 통한 집단적 거래제한도 불가능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 방법이 제기되었는데

첫째 방안은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

둘째 방안은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술인단체의 집단행위를 제도화시키는 방법이다. 보다 세부적인 것은 캐나다 '예술인지위법' 제2장을 참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했다.

캐나다 '예술인지위법' 제2장의 주요 내용

□ 개요: 법 제2장(Part II, 5조~71조)은 법의 당사자가 예술가와 정부, 그리고 제작자임을 확인하고 결사의 자유 및 당사자간 조정기구로서 '예술가와 제작자 사이의 업무관계에 관한 심판소(CAPPRT)'설립과 쟁의절차, 예술가 이익을 대변하여 단체협상의 대표권을 가질 예술가 연합체와 제작자 연합체의 인준 및 설립과정, 쟁의 수단에 관한 내용, 기준협약(Scale Agreement)체결의 과정과 절차, 분쟁 시 해결절차, 불공정행위와 처벌조항 등을 기술하고 이 심판소가 가진 연방정부 관할 내 캐나다 문화영역에서 자영예술가와 제작자 간의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특별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배경:

- UNESCO 1980년 예술인의 지위(Status of the Artists)에 관한 권고: 예술인에게 단체교섭을 허용할 것.
- 1997년 UNESCO 세계대회: "작가와 배우의 권리에 대한 집단적 관리와 단체협약은 경쟁법이나 기타 다른 구속적인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장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작가와 배우에 대한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고용불안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예술인은 그 고용상 지위를 이유로 세금, 사회보

장 또는 단결의 자유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직업 예술인의 대표단체와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행해져야 하며, 이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에 대한 인정이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야 한다”¹⁾)

□ 시행 시기: 1992년 제정 1995년 완전시행

□ 적용대상: 예술인지위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제5조 (정의)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술인”(“artist”)이라 함은 법 제6조 제2항 (b)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자영인을 말한다.
 - “예술인단체”(artists’ association)이라 함은 그 목적의 하나로 그 구성원인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직업상 이익의 유지 또는 향상을 두고 있는 일체의 단체 또는 그 지부를 말하며, 예술인단체의 연합단체를 포함한다.
 - “당사자”(party)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기본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또는 그 해석, 적용, 집행 또는 위반과 관련하여 제작자 또는 예술인단체
 - (b) 심판소에 제기한 고충과 관련하여 고충인 또는 고충의 대상이 되는 자나 그 단체
 - “압력행동”(pressure tactic)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한다.
 - (a) 제작자에게 협약상 작업조건에의 동의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의 인식 하에서 결합하여 복수의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의 정지, 거부 또는 작업계속의 거부 및 작업규정을 준수하면서 복수의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속도의 저하 기타 집단행동
 - (b) 복수의 예술인이나 예술인단체 또는 다른 제작자에게 협약상 조건에의 동의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작인에 의한 작업장소의 폐쇄, 제작의 중단 또는 한명 이상의 예술인에 대한 작업계속의 거부
 - “제작자”(producer)라 함은 법 제6조 제2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기관 또는 방송국을 말하며, 제작자협회를 포함한다.
 - “기본협약”(scale agreement)이라 함은 예술인의 작업제공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최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와 예술인단체가 체결한 서면의 협정을 말한다.
- 제6조 (1) (국가에 대한 구속력) 이 장은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 (2) (적용)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적용된다.
 - (a) 예술 생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명 이상의 예술인이 관여하고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직
 - (i)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 부칙 I 또는 프라이버시법 부칙 및 그 부속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기관
 - (ii) 캐나다연방 방송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배포기업, 프로그램제작기업
 - (b) 제18조 (b)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 직종에 해당하는 독립자영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i) 저작권법 소정의 예술작업, 드라마작업, 문학작업 또는 음악작업의 저작자 또는 영상음향작업에 전반적인 지휘책임을 가진 감독자
 - (ii) 음악작업, 문학작업 또는 드라마작업에서 또는 서커스, 버라이어티, 마임 또는 인형극에서 일체의 방법으로 공연, 노래, 낭송, 지도 또는 연기를 행하는 자
 - (iii) 예술공연, 음악공연, 버라이어티공연, 무용공연,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음향녹음, 광고물의 더빙이나 녹음, 미술품제작 또는 영상예술의 제작에 기여하는 자로서 규칙에서 정한 직업적 범주에 속하는 자
- 제18조 (심판소에의 신청기준)
 - (b) 심판소는 독립자영인이 법 제6조 제2항 (b) 소정의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독립자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i) 관중 앞에서의 독립자영인에 의한 작업의 공연 또는 전시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다른 예술인에 의하여 예술인으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 (ii) 예술인공동체의 관행에 따라 예술인으로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지 여부
 - (iii) 예술인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

* 예술인지위법 직업범주규정(Status of the Artist Act Professional Category Regulations) (1999.4.22)의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음.

(a) 제1범주 : 카메라작업, 조명 및 음향 디자인

- (b) 제2범주: 분장, 미용, 메이크업 디자인
- (c) 제3범주: 무대디자인
- (d) 제4범주: 편곡
- (e) 제5범주: 시청각 제작, 편집, 콘티

□ 절차

- 대표성있는 예술인단체에 대하여 연방 예술인및제작자 직업관계심판소(Canadian Artists and Producers Professional Relations Tribunal)에 의한 인준
- 인준된 예술인단체에 대해서 제작자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
- 협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면, 예술인 작업의 최저조건 기타 예술관련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 합의를 작성.
 - 예술인단체의 인준신청 (법 제25조)
 - 심판소의 청문회 개최
 - 신청이 기간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섭단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판소가 판단(법 제26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기각
 -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법 제27조). 대표성이 있으면 인준, 없으면 기각.
 - 인준된 경우 인준단체는 제작자에 대하여 교섭통지(법 제31조)하고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우송
 -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교섭에 임하여야 함(제32조). 일방 당사자가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소에 단체교섭거부 신청(제53조).
 - 교섭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우송(33조). 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중재에 회부(36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압력행동 행사 가능(46조)

□ 특징

- 캐나다의 일반 노동조합에 비하여 단체성을 인정받기가 용이함.
- 일반노동조합에 비하여 쟁의행위를 하기가 용이함
- 기본협약으로 근로조건외 최저기준을 정함. 따라서 더 유리한 계약 체결이 가능

□ 한계

- 연방 차원에만 법 적용
- 예술인의 정의가 불명확
- 기본협약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불명확
- 노동관계에 관한 규정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세제상의 문제,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고충 해결 방법이 없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당시(2007년) 노동환경상 예술인이 근로자 지위를 부여 받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예술계 내부의 노력과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한다면 전연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예술인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제정 노력과 연결되어 있는 과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ㄴ. 예술인과 고용보험제도

모든 예술인을 풀타임 근로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예술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경우 타인에 종속된 형태보다는 자유업의 성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을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 따라서 “많은 예술인이 원하는 전업예술인으로서 자유로운 작업 시간과 방식”과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통한 생활의 안정”은 상호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1) UNESCO, World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Final Declaration, § 38(e) (1997).

것이 예술인복지정책 설계에서 가장 크나큰 어려움이었다. 예술인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통해 ‘고용보험제도’ 혜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고용 지위 안정을 위해서는 국공립 예술 단체의 설립 확대와 민간 직업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지만, 공공 예산이나 시장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업무관계를 형성하여 ‘근로’를 제하는 대다수 실연예술가의 경우의 특수성을 인정한 고용지원 제도의 개발이 요구되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프랑스의 앵페르미땅 제도였다. 즉,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연기획사나 영화제작사, 방송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고 출연하고 있는 실연예술가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실업급여 및 교육훈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처럼 일반 근로자보다 그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 노동부의 협력체제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합리적 계약 관행의 형성 및 표준계약서 도입, 산재보험 예술인 적용, 예술인 권익대변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존재했다.

3) 민간에서의 움직임

공제회 형식은 아니지만, 2005년 5월 연극인 박정자씨를 대표로 하는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배우들은 출연료 1%씩을, 제작자들은 매표 수입 1%씩을 모아 연극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가칭 ‘연극인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연극인복지재단은 민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인가를 거쳐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연극인 연금과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회원들(여기서는 연극인이 된다)에게 참여 이상의 복지 혜택(이른바 저비용 고급여)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출연금과 수익사업을 확보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정부나 민간부문의 출연기금이나 협조 없이 예술인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사회보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인식의 환기를 위해 일정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민예총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법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의 예술인공제조합 조성 방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조율했고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예술인복지연구 모임을 만들어 내부 워크숍과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정책의 진척이 지지부진되면서 예술인복지제도에 대한 민간에서의 논의는 2008년 이후 수면 아래로 잤아든 측면이 있다.

3. 예술인복지 제도화의 주요 쟁점과 난점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술인복지의 제도화는 예상 밖으로 큰 난항을 겪으며 논의를 거듭하다가 정병국, 서갑원, 최종원, 전병헌 의원의 입법안이 각각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예술인의 고용지위 획득이나 재원대책과 같은 핵심적인 쟁점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발제2에서 다루어질 것임으로 생략) 그런데 예술인복지의 현실적 제도화를 위해 우회한 쟁점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수혜 대상 특성의 문제

현실적으로 한국의 예술인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 한국에서 예술인을 특정하는 문제는 예술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난해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예술인복지의 경우 예술인이 특정되는 것이 직접적 수혜대상의 규모를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예술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이를 발목잡은 측면이 있다. 이른바 예술인복지를 제도화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수혜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을 분야조합이나 협회, 협의체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의 예술단체들은 그런 공신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표적인 예술인단체인 (사)한국예총의 경우 1961년 출범 당시부터 정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 출범한 흑역사를 갖고 있는데다 내부적인 장르단체 간의, 장르단체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오래 겪으면서 회원 숫자 부풀리기를 경쟁적으로 벌여왔고 그 결과 전업 예술인 중심의 회원단체로서의 공신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예총의 경쟁단체라 할 수 있는 (사)한국민예총도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1980년대 후반 예술인들의 민민운동적 결사체로 출발한 민예총 역시 전업적 예술인 회원단체로서의 회원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전업적 예술인단체로서의 엄격한 회원관리가 이뤄진 단체는 범민예총 계열의 문학인 단체인 (사)한국작가회의 정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수혜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행 예술인복지제도는 경력증명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범위 확정에도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창작예술인, 실연예술인 이외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예술매개인력이 현실적으로 예술생태계 주요한 행위자이며 예술작업의 협력자인 동시에 고용불안과 시장실패의 위험을 공유하다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② 신뢰할 만한 민간 대표 조직의 부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의 예술인단체들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부권력 주도로 만들어지거나 그 반대로 저항적 동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겪으며 현업예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직업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구 사회주의권을 제외하면 장르통합적 예술인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희귀한 일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길드적 전통에서 만들어진 동업자조합 형태의 예술인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예술인들도 직업적 대표성을 가진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실제 예술인복지 제도의 현실화에도 필요한 상황이다.

③ 예술계의 상호부조 부재

길드적 전통을 갖고 있는 예술인 조직들에 근거한 서구사회의 예술인 복지제도의 경우 공공재원의 투입과 동시에 동업인들 내부의 상호부조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상호부조를 통한 재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④ 예술인 공적재원 제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비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헌법상 문화국가로서 예술에 대한 국가(공공)의 책임성이 명시되어왔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 적이 없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와 성과관리 위주의 신공공관리행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계량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수혜대상이 한정적인 예술인복지에 대한 공적재원 조성이 매우 어려워졌다. 실제 2013년 초반 기획재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긴급지원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미지출하고 사업을 폐지하려 시도했던 적이 있다. 이는 매우 지엽적인(그러나 저열한) 헤프닝에 가까웠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예술인긴급지원금이나 사회보험료 보조 등에 쓰이는 단발성 예산들조차 예술인 규모에 대한 추계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극히 일부에게 수혜가 가는 방식이다.

⑤ 예술진흥정책 개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 정책

근대적 성장주의에 연원한 예술진흥정책은 예술 내부의 우열과 위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출발하는 예술정책, 예술인정책, 예술인복지정책은 모두 예술적 수월성이라고 명명되는 객관화시키기 매우 어려운 서열구조를 암묵적으로 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예술적 수월성 개념이 예술창작지원정책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예술인복지와 같이 보편성에 기초한 제도의 설계에는 잘 들어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혹은 민족) 예술진흥과 같은 성장주의 담론이 예술정책의 출발

점이 되는 것 자체가 예술의 다원성이 강조되는 현 시기에 잘 부합되지 않으며 큰 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법 입법 경험과 연구자 복지법의 가능성

김진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예술인 복지법에 의하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고 되어 있다. ‘A 조건의 사람으로서 B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정도의 구문인바, A 조건의 핵심은 국가에 대한 공헌이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공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연구자들에게도 익숙한 문화적 사회적 공헌은 그렇다 쳐도, 경제적 풍요에 기여하는 예술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연구자들에게 매우 낮은 정치적 풍요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이것들은 or로 연결된 것인가, 설마 이것들이 and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무런 공헌도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들은 어찌될 것인가.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구문은 논리적으로는 A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중에 B 조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겠다는 의도이겠지만, B 조건 증명 여부에 집중되느라 A 조건은 법 실행 과정에서는 거의 무의미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는 A 조건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 맥락을 먼저 해석해 봐야 한다. 그것은 예술인 복지법 입법을 정당화하는 맥락인데, 바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헌이다.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제3조 ①)”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존중의 근거로 국민국가에 대한 기여라는 A 조건이 또다른 문장으로 반복된다. 염신규 선생님의 발표 마지막에서 언급된, 예술인 복지법이 국가적 성장주의 담론에 포섭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이러한 맥락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지금 연구자 복지법을 논의하는 우리들이 정리한 연구자 권리선언에서 연구자는 이렇게 규정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체계적 지식을 연마하고 전수하며, 합리적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연구 노동이라 한다. 호기심을 품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연구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자는 인류 공공의 지적 체계를 갱신함으로써 공동체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제1조)” 매우 문명적이고 보편적이며 진보적인 관점이지만, 국민국가에서 입법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A 조건 맥락은 선언문 전체에서 누락되어 있다. 연구자 권리선언은 인류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국가기관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다. 어쩌면 염신규 선생님께서 제기한 수정 방향을 성취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 권리선언 그 자체로는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연구자 복지법 입법을 설득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든다. 그저 단순한 문맥으로서 A 조건을 결합시키면 되지 않겠냐는 반론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연구자 권리선언의 담

론 층위를 인류에서 국민으로 조정하는 것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연구자 권리선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을 검토했다. 인류 보편의 수준에서 연구노동자의 권리를 설정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9장에 연구자권리 보장 의무를 국가기관이 지는 것이 당연한 맥락처럼 들어오고, 권리선언 이후 활동 방향으로 연구자 복지법 입법 운동이 설정되는 일련의 과정은 어쩌면 연구자들에게만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이다. 연구자 복지법은 남한이라는 개별 국민국가에서 통용되는 법률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입법기관이 설득되어야 하고, 입법기관은 표로 설득이 되는 것이고, 표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연구자 권리선언의 보편 지향과 남한 사회의 국민국가적 성장주의 사이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맥락을 이제부터라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연구자 권리선언 제1조에 들어 있는 저 “공동체”라는 어휘를 자꾸 쳐다보게 된다.

이미 입법된 예술인 복지법을 선망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어서 연구자 복지법을 생각해본다면, 위의 B 조건에 대한 합의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자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데에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처럼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데, 연구자 복지법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법과 함께 만들어질 ‘연구활동증명운영지침’이 연구자를 규정할 논리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연구 논문 1편 이상 보유한 사람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교사와 학습지노동자와 독립 연구자 등을 배제하게 된다는 반론에 부딪히며 기각되었다. 이 역시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편을 상상하는 층위에서는 아카데미와 무관한 노동자가 연구노동자로 포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연구노동자 주체의 입장에서 연구노동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국가 기관이 연구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연구논문 1편 이상 보유한 연구노동자들만 논의에 참여하였으면서도 연구노동의 보편적 존재 양태를 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구자권리선언의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 실려 있는 민주당 유기홍, 강득구, 윤영덕, 정의당 심상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들의 인사말에서는 비정규교수의 연구안전망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며, 발표 토론도 강사 혹은 신진연구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다시 연구자 권리선언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교사와 독립연구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수준에서 연구자 권리선언의 각 조문을 작성하였던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실상이 이렇다면 오히려 연구노동자의 핵심 범주를 비정규교수에 두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아마 연구재단 같은 국가기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금과 같은 국지적 해결 방향으로 정리 수렴될 공산이 크다.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으로 대상자 선별 문제를 우회하는 과정이 전략적 방안이었다는 김상철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여본다면, 우리도 연구노동자가 비정규교수로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국가기관이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연구노동자를 구별해낼 B 조건의 방안도 전략적으로 구상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을 전후하여 대학 강사들의 자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간강사법’을 내놓았다. 악법이었지만, 어쨌든 이 법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9년 개정강사법이 시행되었다. 강사를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법률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 힘은 열악한 강사 처우를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이었다. 예술인 복지법 입법이 성사되는 데에도 굶어죽은 예술가에 대한 보도가 사회적 여론 환기한 것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누군가 굶어죽고 삶이 결단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보자고 절규하는데, 왜 우리 중의 누군가가 굶어죽고 삶이 결단 나는 일이 벌어져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경쟁의 무간지옥에 빠진 남한 사회에서는, 살 만한 그리하여 정말로 죽지 않고 살 만한 정도로는 안 되고 당사자가 죽을 정도가 되어야 드디어 여론이 환기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자 복지법 입법의 가장 큰 난항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술인은 누구인가?

이상룡(비정규교수노조)

예술인복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핵심 문제는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확정의 문제, 사회보험 적용 범위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정의와 범위 확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 복지법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연구자인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신규, 김상철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예술인복지법 입법 과정에서도 그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상철 선생은 예술인복지법의 쟁점으로 ① 근로자 의제 ② 재원 구조 ③ 대상자 선별 ④ 전달 체계로 정리해 주셨는데, 연구자 복지법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인복지법은 그 적용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가 활동 증명을 받은 경우에만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특히 신진 예술인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라는 구절은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 활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장벽에 막힌 예술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는 활동 증명만이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국가 개입의 적절성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즉,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을 국가가 나서서 저작물의 수, 소득, 실적 등의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규정된 예술 활동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과 예술 활동을 얼마나 넓게 지원할 수 있는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술 활동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예술인은 누구인가? 또는 누가 연구자인가? 이 문제는 예술인과 연구자의 정의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법의 적용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인데, 공적 지원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예술은 귀족이나 왕실, 종교집단과 같은 지배집단의 후원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스스로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을 것이고요. 근대 이후 예술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구조 속으로 편입되는데, 그럼으로써 독립적 지

위와 자율성을 갖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왕실과 귀족의 자리에 국가를 놓자는 것이 공적 지원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문화국가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료주의의 덫에 빠졌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국가가 정한 예술인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보적인 상식을 생각해 봅시다. 속된 말로, 가령 문체부 장관이 자기 돈을 예술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민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재원은 국가에서 마련하는 것이지만, 지급을 반드시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읍면동 마을 단위로 내려갈수록 누구를, 무엇에 대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예술인도 어딘가에서 살 것이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들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활동이 반드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 즉 소위 말하는 작품 활동이나 창작행위에 국한될 필요가 있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에 국한되면 신진 예술인이 배제되고 작품으로 자신이 예술인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실적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관료주의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게 됩니다. 작품 활동뿐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활동까지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 예술 작품이 아니라 예술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적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활동만 있어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대 이전 귀족들이 후원할 때 귀족들이 상응하는 어떤 실적물을 요구했을까요? 누군가가 천거하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족의 자리에 국가가 들어왔는데, 이 국가를 시민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 의한 예술인으로서의 인정과 평판, 동료 평가 등이 누구를, 어떤 활동에 대해 지원할 것인가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실? 친분? 무자격자?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제도를 망가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감수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술인복지정책은 산업이 아니라 예술생태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문화산업진흥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화산업으로 가게 되면 성과물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실적주의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술인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로부터 배제되는 예술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확성, 엄밀성의 추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예술생태계이건 학술생태계이건, 생태계의 보전이라면 다양성이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의 추구에서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이 아니라 명료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할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은 보호가 아니라 지원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보호, 연구자 보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복지법 발표 토론문 :

공공재로서의 예술과 공공재를 만드는 사람들

조서울 (대학원생노조)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21세기의 우리 사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각각 입법 제안 당시의 사회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예술인복지법의 경우 2011년 1월에 시나리오작가이자 영화감독이었던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홀로 사망한 일이 입법 추진 맥락에 들어있었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경우 박근혜 정권 당시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예술계 미투 문제가 입법의 과정에서 불씨를 지폈다. 이러한 입법에 관여한 사회적 맥락들은 강한 시의성을 지녔기에 결과적으로 두 법안 모두 시대상황을 잘 담고있는 한편, 시의성으로 입법이 된 면도 강하게 존재하기에 향후 상호보완될 지점도 관찰된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을 직업으로서 하는 ‘예술인’의 의미를 규정하고 공공재로서의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법제를 통하여 복지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일찍이 예술을 시장논리와는 별개의 공공재로 인식한 결과 일반 노동에 비하여 고용상태를 보증하기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국가들에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잘 구비했다는 점이 아니라, 여타의 시민들에게 제공된 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예술인에게도 동등하게 구현하고자 방법을 찾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에 할당된 예산 비율은 전체의 1.34% 정도이다. 예술도 아닌 문화와 체육과 관광이 합쳐진 곳에 그렇게 적은 양의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예술인 복지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를 집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이 지점에서 토론으로 올리고 싶은 내용은 예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예술 관련 연구자들의 현실이다. 특히 국공립기관에서 최근에 노조 차원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던 수많은 ‘무기계 약직’의 예술 및 전시 관련 ‘비’ 정규직 연구자(큐레이터 포함), 디자이너, 기타 공무원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작품을 만드는 직종과는 결이 다르게 분명히 국공립기관에 고용이 되어있으면서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전반에 깔린 그릇된 직

무에 대한 인식과 가치 평가로 인하여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며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예술인복지법이 여러 의원들의 버전으로 존재하던 ‘법안’ 상태였을 때 정병국의원원의 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스텝, 행정스텝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예술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다 넓게 설정하였다.²⁾ 이와 같은 기준은 프랑스나 독일의 범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논란에 따른 ‘시의성’을 넘어서 예술과 예술이 지니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로서의 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이 공공재로서 시민에게 맞는 전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고려한 법안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 연구자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예술인과 예술의 공공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싶다. 막말로, 전시보는 것 다들 좋아하지 않는가.

2) 손윤석,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법제』, 2015, 13, 인용.

토론문

김세연 (대학원생노조)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선망하는 문화·예술적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의 열기는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은 웹툰 작가, 드라마 작가, 영화감독, 연예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이룩해놓은 결과물들이 밝게 빛나는 와중에,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최고의 작가의 비참한 죽음 이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예술계 종사자들은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복지법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고 고민해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두 선생님의 발표문이 예술인복지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과 달리 ‘출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빠져있습니다. 이로 인해 편집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 출판업 외주 노동자들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문학작품집을 출간한 작가에게는 적용되지만 책 완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용역활동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한 방송작가의 경우 드라마, 예능, 교양 부문은 적용 대상이지만 ‘보도 부문’은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예술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문에서 역시 법 수혜 대상 특성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야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발제문을 읽으며 예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착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예술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 시인과 소설가들을 보면 대부분 빈곤하며 그로 인해 작품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춥고 배고픈 작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고통들은 스스로 감내해야할 것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예술가를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보는 인식도 이러한 문제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 노동의 값을 제대로 매기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문단 쪽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도 문예지나 잡지에 글을 청탁하고 실을 때 원고료를 생략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기본적으로 작가는 돈 문제에 초연하고 청빈해야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